

**2017년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추가선발(추경) 추진 계획**

2017.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역량개발지원실)

목 차

I. 사업목적 및 경과	1
II. 추가선발 기본 추진 방향	2
III. 추가선발 개요	3
IV. 선발 및 평가	10
V. 추진일정(안)	13
VI. 기타 행정 사항	14

※ 참고1 사업 중복참여 제한

참고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참고3 해외 지정공모 기관 선정 현황(추가선발)

참고4 해외취업유망 15대 국가 인력수요 상위직종 및 부족직종

I 사업목적 및 경과

□ 관련

-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2516(2017.07.25. : 2017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추가경정예산 관련 안내)

□ 사업 목적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전문대학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전공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언어능력과 전공실무능력을 동시에 배양
 - 글로벌 현장 학습 경험을 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 지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사업 추진 경과

내 용	일 정
○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 2월 21일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 3월 10일
○ 대학 선정평가	: 3월 16-17일
○ 사업관리위원회 개최	: 3월 23일
○ 대학별 파견자 확정 및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4월 5일
○ 대학 사업담당자 교육 및 연수(Level I)	: 5월 11일
○ 학생 오리엔테이션 1차	: 5월 13일
○ 국고보조금 교부	: 5월 8일(1차)
○ 대학 사업담당자 교육 및 연수(Level II)	: 5월 31일 - 6월1일

II 추가선발 기본 추진 방향

【 사업 추진 방향 】

- ① 취업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 ② 사업접근성 확대를 통한 대학의 참여 확대 유도
- ③ 소규모 지원 대학의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역량 배양

□ 취업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최우선으로 선발하여 ‘교육의 기회평등’ 실현

□ 사업접근성 확대를 통한 대학의 참여 확대 유도

-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평가지표를 간소화하여 사업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신규대학 참여 환경마련 및 사업접근성 확대
- 사업 신규 참여 및 미참여대학에 가산점 확대 및 조건완화
 - ※ 가산점 : 기존 3점 → 변경 5점
 - 미참여대학 기준 : 기존 5년 연속미참여 → 변경 3년 연속미참여

□ 소규모 지원 대학의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역량 배양

- 3명 이하 지원의 소규모 지원 대학은 별도로 TO 등 배분
- 지정공모 개설 취지에 맞추어 소규모 지원 대학에 지정공모 배정
 - 글로벌 현장학습 진행을 위한 해외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지정공모의 원 취지에 맞추어 소규모 대학에 지정공모 우선 배정
 - ※ 지정공모 : 해외 파견 인프라가 부족한 전문대학을 위해 위탁기관이 심사를 통해 선정한 해외 교육기관으로 연결하여 사업진행

III 추가선발(추경) 개요

1. 개요

□ 예산

- 총 1,185,000 천원
 - 추경사업비 : 1,124,000 천원, 운영비 : 16,000 천원 (계 1,140,000천원/ 146명 규모)
 - 기존사업비(*) : 50,480 천원 (참여포기 등으로 인한 미교부 잔액)
- ※ 열린전형자 중 공인어학성적 제출불가 등 TO 회수로 기존 사업비는 증가예정

□ 사업 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12개월) 기존동일

□ 선발 인원 및 공모분야

- 선발인원
 - 153명 내외 (취업취약계층 70명 내외 선발)

구분	내용	규모별		비고
		일반규모	소규모	
자유공모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	123		* <u>취업취약계층 70명</u> 내외 우선선발
지정공모	협의회 지정공모심사로 선정된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	해당 없음	30	* 열린전형없음
계		153		

- ※ 소규모 대학 : 3명 이하 지원 대학
- ※ 대학의 신청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은 협의회가 명단을 선발하여 통보, 비 취업취약계층은 TO로 배분하여 대학이 최종결정
- ※ 취업취약계층 참고를 위해 접수마감 10일 전 사전명단을 접수하여 일모아 시스템으로 조회 후 결과 발송예정

○ 공모분야 별 모집인원

규모별	유형별	파견 권역			비고
		가 권역	나 권역	다 권역	
일반 및 소규모	자유공모	77	15	31	
소규모대학	지정 - 미국	10			
	지정 - 영국	5			
	지정 - 호주	15			
계		107	15	31	153

※ 신청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파견 국가

- 글로벌 현장학습이 가능한 모든 국가(지정공모는 별도 지정한 국가)

□ 파견 기간

- 16주 (4개월, 해외체류기간 입출국일 포함 112일 이상)

□ 모집 및 파견 일정

- 사업계획서 제출 : 8월 초
- 평가결과에 따라 TO 배분 및 학생선발 : 8월 중
 - ※ 취업취약계층은 협의회가 명단 선발, 비 취업취약계층은 TO배분
- 사전 교육 및 파견 : 9월 ~
 - ※ 대학이 수립하고 계획·조정된 일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

2. 참여 대상 및 조건

□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 중인 전문대학
-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하여 20학점 내외로 학점인정이 가능한 대학
 - *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 명시 및 내부규정(시행세칙) 수립

- 국고보조금의 30% 이상 대응투자 가능 대학(의무)
- 참여 기본자격을 갖춘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희망자 명단 확보 가능한 대학

□ 학생

- 참여 조건

조 건	내 용
신분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파견예정 시기 재학생 신분 유지)
학점	-누계 평점 3.0/4.5(B0) 이상인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언어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 (하단 표 참조)
기타	- 비자발급 등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인성, 건강, 신상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학생 -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년도 종료 후 3년간 개인정보 제공(취업처, 취업정보 현황) 동의 -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참여 불가*

* 【참고 1】 사업중복 참여 제한 참조

- 언어별 어학 자격 및 적용

언어	어학시험성적 종류 및 기준점수	비고
영 어	NEAT 1급 160점, TOEIC 550점, G-TELP 2등급 42점, OPIc NH 등급, 토익 Speaking 레벨5(110점), TEPS 450점, ESPT 3급, PELT 3급, TOEFL(PBT 450점, CBT 137점, IBT 55점), TOSEL(A)397점, TESL 104점, IELTS 4.5 이상	- 어학성적은 접수마감 일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성적만 인정
중국어	新HSK3급, TSC 레벨3, CPT 300점, BCT 2급 이상	
일본어	JPT 415, JLPT 신N4, SJPT 레벨3, 니켄 450점 이상	

- 반드시 소속 대학을 통해 참여 (학생 개인 신청 불가)

3. 재정지원

구분		내용	지원범위
정부	정부지원금	파견 권역별로 450~800만원 차등 지원	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현지어학교육비, 직무교육비, 체재비(일부), 현지관리운영비 지원
대학	대학 대응투자금	정부지원금의 30% 이상 투자	정부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한 추가 비용 및 현장학습 관리 및 점검비용 등의 간접경비 투자
학생	학생 자비부담금	정부지원금의 20% 이내 제한	학생 본인의 현지체재에 필요한 비용(식비 및 교통비 등)

- 국고보조금 : 450~800만원 내외 (언어권별 차등 지원)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추가지원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해당 구분에 따라 학생자비부담 경비 차등(100~60%) 지원
 - ※ 취업취약계층 구분은 세부사항 **【참고 2】** 참조

- 대학 대응투자금 : 국고지원금의 30%이상 (의무사항)
 - 국고보조금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한 추가 비용 및 글로벌 현장학습
관리·점검비용 등의 간접경비 포함

- 학생자비부담금 : 국고지원금의 20%이내
 - 학생 자비부담금이란 학생 본인의 현지체재에 필요한 필수적 비용
(식비, 교통비 등)을 말하며, 국고보조금의 20% 이내 제한
 - ※ 국고지원금의 '체재비' 항목에 준하는 형태로만 운용가능 (피복비 등 불가)

〈파견 지역별 국고지원금 지원 기준(4개월) 예시〉

(단위: 만원)

구분	항공료	비자 발급비	보험료	어학 교육비	직무 교육비 ¹⁾	체재비 일부 ²⁾	현지관리 운영비 ³⁾	계
가 권역 (미주,오세아니아, 중동,유럽)	180	50	40	150	150	90	140	800
나 권역	아프리카 ⁴⁾	180	40	40	110	110	70	650
	일본/홍콩/싱가포르 ⁵⁾	70	40	40	140	140	90	
다 권역 (중국,동남아)	50	30	40	90	90	70	80	450

※ 국고지원금은 상기 표의 지원기준 항목 이외 집행 불가하되, 대학별 예산계획에 따라 항목 간 조정은 가능하며 정부해외인턴사업 실행예산 편성지침의 소요경비 단가 준용

※ 주해석

- 주1) 산업체 배정 관련 실시되는 현지 직무관련 교육비 등
- 주2) 체재비(일부)는 현지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일부(증빙별도 마련)
- 주3) 현장학습 참여 학생과 산업체 관리 및 배정비 등 관리비용
- 주4) 아프리카는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 항공료가 높아 현지 물가에 비해 지원금을 높게 적용
- 주5) 싱가포르/홍콩의 경우 현지 물가를 고려하여 일본과 동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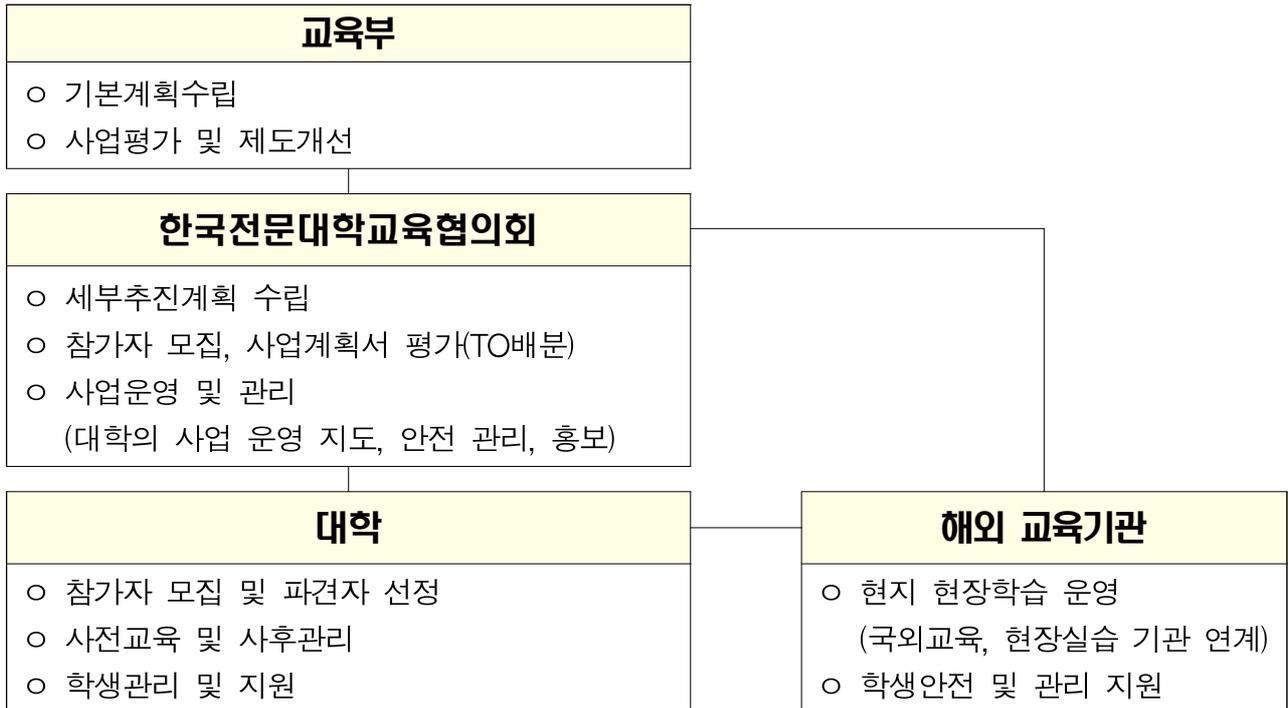
〈취업취약계층 자비부담경비 지원 비율〉

(단위: 만원)

소득 구분 (자부담대비 지원비율)	미국/중남미/유럽/중동권	일본/아프리카/싱가포르/홍콩	중국/동남아권
기초생활수급자(자부담금액대비 100%)	160	130	90
차상위계층, 기타 취업취약계층 (자부담금액 대비 80%)	128	104	72
차차상위계층(자부담금액 대비 60%)	96	78	54

4. 사업 추진 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 프로그램별 세부역할

3단계	대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출국 전) 사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전 사전 적응교육 40시간실시 (어학, 인성 직무, 문화,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 - 멘토링제 실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배 멘토 연결 등) ○ 지도 및 체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닝 교육(필수과목 지정) 지도 및 참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적응교육 및 현지 취업 정보 등 제공) - 파견학생 현황 파악 - 비자 및 참가자 출국 전 준비 사항 등 대학 상시 지원
국외 현장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적응교육(4~8주)과 산업체실습(8~12주), 총 16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학생 및 대학 추진 상황 상시 파악

3단계	대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및 체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안전관리 (인근 시설 체크, 비상연락망 확인 등) - 학생의 활동보고 (학생의 실습일지 작성 등) 및 학생지도 - 추진 상황 월별보고 - 국외 현장점검 (권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참가자 필요사항 지원 - 국내·외 현장점검 및 운영 상시 책임 지도·관리
(귀국 후)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제) 멘토링제 운영 및 취업 특강 등을 통한 취업지원교육 - (성과관리) 학생 역량 측정, 대학자체평가, 성과지표관리 등을 통한 학습 성과관리 - (성과확산)귀국 후 결과발표회, 우수 실적사례 등 종합한 결과물제출 ○ 지도 및 체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사실증명서, 글로벌 역량척도 측정(가칭), 공인어학시험 결과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 최종결과 및 자체평가보고서 및 성과자료 분석 - 대학 취업률 누적조사 (3년, 전체 대상) - 대학의 우수사례 발굴로 운영사례발표 등 사업 홍보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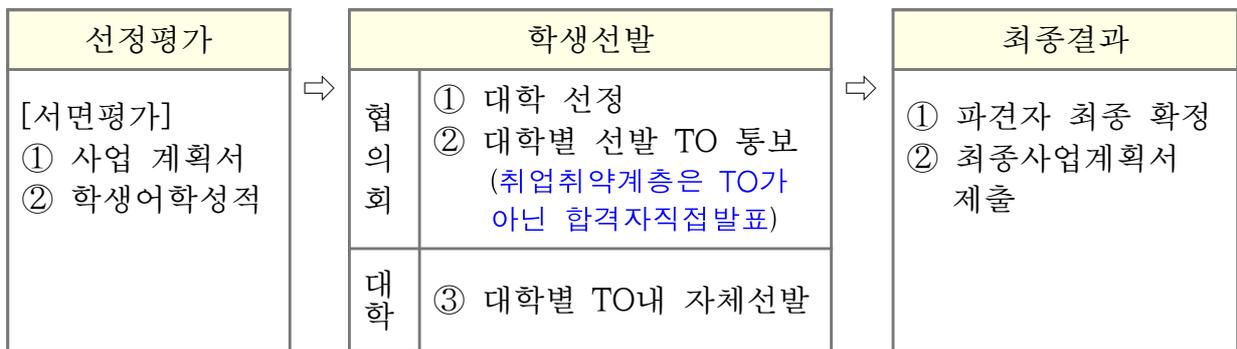
IV 선발 및 평가

1. 선발 방법

□ 선발방식

-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를 통해 대학별 TO 및 선정자(취약계층)를 결정, 통보하고, 대학은 배정 TO내 학생을 결정하여 최종확정

□ 선발절차



- 대학이 기획, 구성한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학생서류(명단)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TO를 배정받아 진행
 - ※ 대학별 신청 최대 인원은 30명으로 제한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공모별(자유, 지정) TO 배정 및 학생선발(취업취약계층)
 - ※ 사업진행 중 포기자 발생시 대학이 사업신청시 제출한 명단내에서 변경 가능(승인 필요)

2. 평가 방법

-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대학이 제출한 현장학습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심사·평가 (60점 미만 과락)
- 위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가 TO배분 및 취업취약계층 선발자 선정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안]

구분	지표	평가 항목
사업계획 평가 (100)	사업 내용(60)	학생선발
		교육 프로그램 구성 (3단계)
		사후 관리
		학점 부여 방법의 합리성
	사업 추진 체계(25)	전담부서 및 운영 프로세스
		파견학생 현지 관리 방안
	사업 예산(10)	예산계획 적정성
	사업 성과 관리(5)	기존 사업 실적
(가점 5) 신규대학 우대	신규대학 가점	지난 3년간('14~'16) 사업미참여 대학

3. 균형 선발

□ 사회안전망 구축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 별도 선발 : 70명 내외 규모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등) 구분은 세부사항 **【참고 2】** 참조

< 취업취약계층 확인 안내 >

1. 취업취약계층 판별을 위해 접수마감 10일 전(8월 10일) 사전명단 및 정보활용동의서를 접수하여 일모아 시스템으로 조회 후 판별결과 대학안내 (대학은 결과를 사업계획서 제출시 참고 및 활용, 시스템 업로드 후 결과조회까지 7일정도 소요됨. 최대한 많은 인원 제출 권장하며 제출이 늦는 경우 안내가 지연 혹은 불가능할 수 있음)
 ※ 1의 결과는 사업진행을 위한 참고로서, 2의 조회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2. 사업계획서 제출마감 후 협의회가 최종 조회하여 그 결과로 취업취약계층을 최종 확정

□ 지역 균형

- 균형선발을 위하여 한 개 권역이 최대 40%를 넘지 않도록 고려
 - 권역 :수도권, 영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4. 기타 사항

□ 사업 포기자 관리

- 일반(비취업취약)계층 : 대학이 제출한 최초신청명단 내에서 대체 가능 (TO 범위내)
 - ※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TO 회수 후 대학 평가점수 등 순으로 재배분
- 취업취약계층
 - ① 대학이 제출한 최초신청명단 내에서 미선정 취업취약계층인원이 있는 경우 대체
 - ② 대체불가능의 경우 TO 반납·회수하여 대학 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 가능 취업취약계층 인원이 있는 대학 인원 선정

V**추진일정 [안]**

내 용	일정
○ 사업공고 및 안내	: 8. 2(수)
○ 사업신청 접수기간 - 취업취약계층 사전조사	: 8. 21(월) : 8. 10(목)
○ 사업계획서 평가	: 8. 24(목)
○ 사업관리위원회 및 결과 발표	: 8. 28(월)
○ 대학별 사전교육	: 대학별 일정
○ 대학별 현장학습 파견	: 대학별 일정
○ 국내·외 현장점검	: 10월 ~ 12월
○ 귀국,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 2018. 2월

VI 기타 행정사항

□ 접수마감일

○ 사업신청서 마감일 : 2017. 8. 21 (월)

○ 제출방법 : 방문 혹은 우편 제출 및 파일 e-mail 발송(*)

※ 이메일 제출처 : kcceapp@kcce.or.kr

용량 문제로 전자문서 첨부이 불가능할 경우 대용량 첨부 가능한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

- 대학 제출 서류

1. 공문(전자문서 발송 및 인쇄) 1부

2. 사업 신청서 6부 (hwp 파일 및 양면 인쇄 제본) ※스프링제본 금지

3. 사업 신청자 명단(엑셀 파일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 설정 (암호는 0815 설정)

4. 신청 학생 관련 서류 (PDF 파일 및 신청서 제본시 합철)

· 공인어학성적표 스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업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

※ 일모아시스템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그 외 취업취약계층' 중 일부는 제출필요

· (복학 해당자) 총장확인서

□ 취업취약계층 사전조사

○ 조사신청 마감 : 8.10(목)까지 e-mail 발송

※ 이메일 제출처 : kcceapp@kcce.or.kr

※ 최대한 많은 인원 제출 권장하며 제출이 늦는 경우 안내지연 및 불가능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1) 조사자 명단 (3.사업신청자명단 서식 활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고1 사업 중복참여 제한

동 사업은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중복참여를 제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함(일모아 시스템 관리)

□ 대상사업

- 『직접 일자리』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 전체
 - 소득보전형 사업*은 모두 전일제로 간주
-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 등

□ 전일제 일자리사업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하고 제한
- 전일제와 전일제, 전일제와 시간제, 전일제와 간헐제 등을 막론하고 중복참여 불허

□ 시간제·간헐적 일자리사업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참여 허용
- 시간제와 시간제, 시간제와 간헐적 사업 중복참여 허용

< 직접 일자리 분류 기준 >

구 분	분류 기준	예 시
전 일 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등
시 간 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복지형」 등
간헐적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참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중 「인력파견형」 등

참고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동 사업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7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인정하고 선정함

* 2017년 개정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중 ①저소득층 ②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장애인 ④만 55세 이상 고령자 ⑤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해당자만 인정

□ 취업취약계층 인정범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인정방법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인정

* '17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그 외 취업취약계층

-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만 55세 이상 고령자 등
- 인정방법 :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한부모가족, 만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인정 (그 외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 하단 '취업취약계층 범주에 따른 자비부담 경비지원 및 증빙서류' 세부내용 확인

□ 취업취약계층 범주에 따른 자비부담 경비지원 및 증빙서류

구 분		자비부담 경비지원	증빙서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	<p style="text-align: center;">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전문대협에서 행정적으로 검증 및 확인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p>	
	차상위 계층	자활대상자		80%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대상자		
		우선돌봄대상자		
차차상위계층	60%			
장애인		80%		<p>국적취득 전: 외국인등록증 (F2, F-5, F-6비자)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p> <p>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p> <p>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p> <p>하단 여성가장 증빙서류 내용 참조</p> <p>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p> <p>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갯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p> <p>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발급한 수용증명서</p> <p>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p>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한부모가족				
만 5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 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취업취약계층 유형*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대학내 구비)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저소득층 ③장애인 ④만 55세 이상 고령자 ⑤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해당자만 인정

※ 그 외 8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인정

□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확인 시 참고자료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건강보험료납입액 한도('17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28,383	4,674 4,980	27,563 29,368	미포함 포함
	2인	1,407,000	43,714 46,577	18,603 19,821	44,329 47,233	미포함 포함
	3인	1,820,000	55,746 59,397	36,034 38,394	56,367 60,059	미포함 포함
	4인	2,234,000	69,115 73,642	59,938 63,864	70,038 74,625	미포함 포함
	5인	2,647,000	81,698 87,049	81,836 87,196	82,550 87,957	미포함 포함
	6인	3,060,000	93,887 100,037	99,483 105,999	94,981 101,202	미포함 포함
	7인	3,473,000	106,673 113,660	117,399 125,089	107,451 114,489	미포함 포함
	8인	3,887,000	119,960 127,817	135,682 144,569	121,620 129,586	미포함 포함
	9인	4,300,000	133,141 141,862	151,167 161,068	135,080 143,928	미포함 포함
10인	4,713,000	145,018 154,517	163,570 174,284	147,189 156,830	미포함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차상위)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납입액 한도('17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92,000	30,600 32,604	7,839 8,352	30,872 32,894	미포함 포함	
2인	1,689,000	51,982 55,387	30,112 32,084	52,020 55,427	미포함 포함	
3인	2,185,000	67,310 71,719	56,120 59,796	67,539 71,963	미포함 포함	
4인	2,680,000	82,550 87,957	83,055 88,495	83,116 88,560	미포함 포함	
5인	3,176,000	97,367 103,745	104,084 110,902	98,270 104,707	미포함 포함	
6인	3,672,000	112,929 120,326	126,353 134,629	114,231 121,713	미포함 포함	
7인	4,168,000	127,753 136,121	145,220 154,732	129,385 137,860	미포함 포함	
8인	4,664,000	143,052 152,422	161,510 172,089	145,018 154,517	미포함 포함	
9인	5,160,000	160,431 170,939	180,119 191,917	163,084 173,766	미포함 포함	
10인	5,656,000	174,203 185,613	193,901 206,602	177,135 188,737	미포함 포함	
※건강보험료납입액은 신청일 기준 전 달 납입액으로 산정하고, 가구원수는 보험 명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만20세~만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결혼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위기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여성가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colspan="2">첨 부 서 류</th> </tr> </thead> <tbody> <tr> <td>배우자 無</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td> </tr> <tr> <td rowspan="8">배우자 有</td> <td>가출·행방불명</td> <td>실종신고서</td> </tr> <tr> <td>장애</td> <td>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td> </tr> <tr> <td>질병</td> <td>의사의 진단서</td> </tr> <tr> <td>군복무</td> <td>복무확인서</td> </tr> <tr> <td>학교 재학</td> <td>재학증명서</td> </tr> <tr> <td>교도소 입소</td> <td>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 </tr> <tr> <td>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td> <td>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td> </tr> <tr> <td>이혼소송 제기</td> <td>이혼소송확인서</td> </tr> <tr> <td>기타 가족 생계 부양</td> <td colspan="2">통·반장의 확인서(검토)</td> </tr> </tbody> </table>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구 분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성매매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갱생보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만 55세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시작(예정)일 시점 만 55세 이상인 자

참고3 추가선발 해외 지정공모 기관 현황(추가선발)

□ 현황 : 3개 기관

연번	국 가	기 관 명	계열/전공분야	선정규모(명)
1	미국	Western Iowa Tech Community College	간호·보건	10
2	호주	Northern Sydney Institute TAFE	호텔·관광·서비스 / (그래픽·웹)디자인	10 / 5
3	영국	Burton and South Derbyshire College	유아교육	5

참고4 해외취업유망 15대국가 인력수요 상위직종 및 부족직종

□ 해외취업유망 15대국가 인력수요 상위직종

No.	국가	인력수요 상위직종 (코트라, '15.4월 조사결과)
1	미국	정보통신전문가 기술직(83%), 경영 금융전문가(10%)
2	캐나다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40%), 기타 기능 관련직(20%)
3	독일	정보통신전문가·기술직(60%), 운전·운송관리직(15%), 판매·고객서비스관리직(11%)
4	일본	공학전문가·기술직(96%), 정보통신전문가·기술직(2%)
5	싱가포르	운송·여가서비스직(54%),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사무직(11%), 경영·금융전문가(10%)
6	호주	조리·음식서비스직(38%), 판매·고객서비스 관리직(15%),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12%), 운송·기계 관련 기능직(9%)
7	베트남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42%), 판매·고객서비스 관리직(2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15%),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13%)
8	인도네시아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32%), 행정·경영지원 관리직(28%), 판매·고객서비스 관리직(19%)
9	중국	운송·여가서비스직(42%),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37%)
10	아랍에미리트	운송·여가서비스직(46%), 공학전문가·기술직(46%)
11	카타르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21%),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16%), 화학관련 기계조작직(16%), 전문서비스 관리직(14%)
12	사우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92%)
13	쿠웨이트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51%), 공학전문가·기술직(33%)
14	브라질	-
15	멕시코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68%)

※ 출처 : 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유망 15대국가 현지 부족직종 현황'

□ 해외취업유망 15대국가 부족직종

No.	국가	부족직종 (산업인력공단, '15.8월 조사결과)
1	미국	숙련기술자, 운전사, 교사, 영업원, 행정전문직, 관리자, 간호사, 기술자, 회계사무원, 엔지니어
2	캐나다	<p>금융·통신 및 그 외 사업 관련 고위직 종사자, 무역·방송 및 그 외 서비스 관련 고위직 종사자, 재무담당 관리직, 인적자원 관리자, 상품구매관리자, 보험·부동산 및 금융중개관리자, 보건 관리자, 건축 관리자, 주택 건축 및 수리 관리자, 1차 산업분야 생산 관리자(농업제외), 제조 관리자, 금융 감사 및 회계사, 투자 분석가, 투자 딜러, 각종 금융 관리자, 광고·마케팅 홍보 전문가, 금융·보험 감독 사무직, 자산 관리자, 지구학자 및 해양조사관, 토목 엔지니어, 기계공학자, 전기·전자 엔지니어, 석유 공학자, 정보시스템 분석가 및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데이터 관리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및 양방향 미디어 개발자, 기계공학 전문 기술자 및 기사, 건설공사 견적원, 전기 전자 공학 분야 기술자 및 기사, 공업기계 기술자 및 정비공, 감사관/조사관: 공공안전, 환경건강, 직업건강, 안전관련,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자, 간호 코디네이터 및 관리자, 공인 간호사 및 정신과 간호사, 전문 내과의사, 일반의 및 가정의, 영양사, 청강학자 및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직업 치료사, 호흡기 치료사, 임상관류사 및 심폐소생사, 방사선과, 초음파기사,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종사자, 대학교수·강사, 심리학자, 유아 교육 교사, 번역가 및 통역가, 기계가공·금속성형 관련 종사자, 전기 통신 관련 종사자, 목공 관련 종사자, 그 외 건축·설치·수리 및 서비스 종사자, 기계운전·공작기계 및 공고 검사관, 공고 및 금형 제조자, 판금 가공 기사, 보일러 제조원, 금속구조물·판금공작 및 조립기술자, 철공 종사자, 용접기사 및 기기 조작자, 전기기사(산업, 전력 제외), 산업 전기 기사, 전력 전기 기사, 전력 케이블 기사, 통신 케이블 기사,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케이블 TV 서비스 및 유지 관리자, 배관공, 증기파이프 시설공·연관공 및 스프링클러 설치기사, 가스 설치 기사, 목수, 가구제작 기술공, 벽돌공, 콘크리트 마감공, 타일공, 미장공, 지붕잇기공, 유리 설치원, 단열 기사, 도색공 및 도배기사(실내인테리어 제외), 바닥 설치기사, 정비공, 중장비 조작관련 종사자, 출판·인쇄 관련 관리자, 철도 수공 관리자, 자동차 및 수송관련 종사자, 기계수리 및 기술자 및 산업 정비공, 중장비 정비 정비원, 냉각 및 공조 기사, 철로 정비사, 항공정비사 및 항공기 감독관, 기계설비 기술자, 엘리베이터 제조 및 정비사, 자동차 부품 수리원 및 트럭·버스 정비원, 차량 차체 정비공, 유류 및 고체연료 난방기 관리자, 가전제품 서비스 수리원, 전기 수리원, 오토바이·ATV 관련 정비사, 그 외 소형 엔진 및 소형 장비 정비원, 철도기사·기관사, 열차승무원·보조차장, 크레인 조종원, 시추 및 파쇄기사·노천채광 채석·건설, 지하수 굴착 기술자, 인쇄기 조작원, 그 외 관련 직업 종사자, 벌목·산림 관리자, 광산·채석 관리원, 오일·가스 채굴 서비스 종사자, 지하자원 채굴원, 유정/가스정 채굴·시험 및 관련 종사자, 벌목기기 조작원, 농업·농장관리 및 특수 가축 종사원, 조경·토양관리·원예 서비스업 종사자, 조업선박 선장 및 선원, 수산물 채취원, 광물·금속가공 관리자, 정유·가스·화학제품 처리 및 설비 관리원, 식품·음료 및 관련 가공제품 관리자, 플라스틱·고무제품 제조 관리자, 목재 가공 관리자, 섬유·모피·가죽 제품 가공 및 제조 관리자, 자동차 부품 조립관리자, 전자제품 제조 관리자, 전기제품 제조 관리자, 가구 및 부착물 제조 관리자, 그 외 기계 및 금속제품 제조 관리자, 그 외 제품 제조 및 조립 관리자, 광물 및 금속가공 중앙 제어 및 처리기사, 석유·가스 및 화학물 처리기사, 펄프·제지 및 코팅관리 종사원, 발전기 및 전력 관련 기사, 폐수 처리장치 조작원, 전문 요리사, 일반 요리사, 정육원·수산물 판매업자(소매·도매업), 제빵사</p>

3	독일	자동화 기술 직종, 건설전자 직종, 전기기계공학 직종, 전기산업공학 직종, 파이프 설치 및 유지 보수 직종, 전기(전문성 없는) 직종, 감독-전기 직종, 배관(전문성 없는) 직종, 위생·냉난방 기술 직종, 냉동 기술 직종, 감독-배관·위생·난방·공기 직종, 철도운영 기술 직종, 철도 인프라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전문 직종, 철도 운영 모니터링 전문직 직종, 철도 차량 운전자 직종, 보건 및 간호(전문성 없는) 직종, 간호 전문 직종, 수술 기술/의료 기술 지원 직종, 노인 케어 전문 직종
4	일본	제조업 분야의 숙련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인력, 장기요양치료, 복지 관련 종사자, IT 전문인력
5	싱가포르	· 고급인력 : 교수, 관리자, 기술자 · 미숙련인력 : 사무 판매, 관광서비스, 생산, 교통운영, 청소부, 인부
6	호주	건설 관리자, 공학 관리자, 생산 관리자, 육아교육센터 관리자, 보건복지 서비스 관리자, 회계사, 회계·총무 담당자, 보험계리인·수학자·통계학자, 토지경제학자, 해운 전문가, 건축가, 지도 제작자·측량사, 화학·재료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전기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산업·기계·생산 기술자, 광산 기술자, 농업·임업 연구원, 의학 연구원, 의사, 보육 교사, 중등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사, 의료영상 전문가, 환경 위생 전문가, 검안사, 척추 지압사·접골사, 작업 요법사, 물리 치료사, 발 치료사, 담화 전문가·청력학자, 전문직 종사자, 마취과 의사, 내과 의사, 정신과 의사, 외과 의사, 조산사, 간호사, ICT 분석가, 소프트웨어·앱 프로그래머, 컴퓨터 네트워크 전문가, 무선통신공학 전문가, 법정 변호사, 사무 변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토목공학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무선통신 기술자, 자동차 기술자, 모터 정비공, 판금 기술자, 구조용 강재·용접 기술자, 금속설비기계 기술자, 정밀금속 기술자, 패널 기술자, 벽돌공·석공, 목수·소목장이, 페인팅 기술자, 유리시공 기술자, 미장이, 타일 기술자, 배관공, 전기 기사, 에어컨·냉장고 수리공, 배전 기술자, 전자장치 기술자, 요리사, 조선공, 소목장, 치과 위생사·의사·치기공
7	베트남	한국진출기업의 중간관리자 및 기술직, 건설·금융·IT·서비스 등
8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중간관리자, 플랜트 엔지니어, 금융 및 보험
9	중국	기술자, 영업, 운영·관리, (비숙련)노동자, (경력직)무역, IT, 생산관리, (R&D)연구원
10	아랍에미리트	건설플랜트, 석유·가스, IT 분야, 항공 및 호텔분야
11	카타르	의료분야, 항공승무원,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 IT 전문가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건설관련 영업직
12	사우디	교통·물·항공산업·보건의료·웨딩산업분야 인력
13	쿠웨이트	건설 분야 및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14	브라질	기술자, 숙련기술직, 생산관리직, 비서·사무행정원 등, 비숙련공,, 운전기사, 영업사무직, 엔지니어, 재무/회계사, IT 인력
15	멕시코	영업사무직, 비서·사무행정원, 숙련기술직, 엔지니어, 생산관리직, 기술직, 재무/회계사, 관리직, IT 인력

※ 출처 : 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유망 15대국가 현지 부족직종 현황'